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November 30,
2021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Articles
- III. FAQ
- IV. News
- V. Events

Key Contacts

삼성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기업의 회계제도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교육 프로그램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 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 제목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2021.11.1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20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부거래 현황'이라 하며,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은 신규 항목으로 추가)을 분석·발표했다.

* 공정위는 '21.5.1.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 주요 분석·공개 내용 >

-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5조원, 비중은 11.4%로 지난해(196.7조원, 12.2%)보다 감소했으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6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0.7%p(12.2%→11.5%), 내부거래 금액은 16.6조원(196.5조원→179.9조원) 각각 감소했다.
 -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1.0%p (14.1%→13.1%), 금액은 15.0조원(150.4조원→135.4조원) 각각 감소했다.

* (2020년, 2021년)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 (내부거래 금액 감소 8개 집단) 에스케이(△11.4조원), 엘지(△1.5조원), 롯데(△1.0조원), 한화(△0.6조원), 지에스(△0.1조원), 현대중공업(△1.8조원), 신세계(△0.1조원), 씨제이(△0.6조원)

*** (내부거래 금액 증가 2개 집단) 삼성(0.9조원), 현대자동차(1.2조원)

- 아울러,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신규 지정 집단(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 지정 집단(11.5%)보다 3.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중앙」(31.6%), 「대방건설」(30.5%), 「반도홀딩스」(11.9%)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신규 지정 집단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3.0%)이 낮아 내부거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음.

-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이며, 그 중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가 131개사**(상장사 2개, 비상장사 129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가 96.2%(126개사/131개사)임.

** 131개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138개사의 내부거래 금액(2.98조원) 중 2.73조원으로 91.6%에 달함.

-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주된 업종(59개사)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이며, 해당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1.75조원)은 전체 금액(2.98조원)에서 58.6%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20% 미만인 회사(11.5%)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기준, 단위 : %)

총수일가 지분율	20%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내부거래 비중	11.9	9.8	12.2	15.3	28.6
총수2세 지분율	20%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내부거래 비중	11.5	22.7	24.0	24.3	32.4

- 다만,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각각 감소(19.1조원→18.5조원, 5.8조원→2.7조원)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2%p, 0.1조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감소(△1.2%p, △2.4조원)했다.

* ①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②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③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 다만, 연속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0.9%p, △0.7조원)한 반면, 신규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분석대상 36개)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1.1조원, 34.6%)은 높게 나타났다.

-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12.1% 대 10.5%)은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회사 수(214개 대 363개)* 및 내부거래 금액(8.9조원 대 24.1조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7배 많았다.

* '21.5.1. 기준 사익편취 규제대상 265개사, 사각지대 444개사 중 계열제외 등의 사유로 미공시한 회사 및 '20년 말 기준 매출액이 없는 회사 등 51개사, 81개사를 각각 제외함.

(2019년 말, 2020년 말 기준, 단위 : %, 조 원, %p)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2.1	8.9	11.9	8.8	0.2	0.07
사각지대 회사	10.5	24.1	11.7	26.5	△1.2	△2.4

* 규제대상 회사는 '19년 176개, '20년 214개. 사각지대 회사는 '19년 343개, '20년 363개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각각 △1.7%p, △6.3%p)과, 금액(각각 △0.1조원, △3.7조원)도 각각 감소했다.

(2019년 말, 2020년 말 기준, 단위 : 개사, 조 원, %)

구분	회사수	내부거래 금액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비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14	8.9	8.3(8.4)	93.7(95.4)
사각지대 회사	363	24.1	21.5(25.2)	89.0(95.3)

* () 안의 값은 '19년 수의계약 금액 및 비중을 나타냄

- 금년에는 상품·용역의 내부거래 현황 뿐 아니라,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 (자금차입) 연속 지정 기업집단(63 개) 중 49 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6 조원이며,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7 조원(25.3%)으로 나타났다.

-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39 조원), 「롯데」(0.12 조원)*, 「네이버」(0.08 조원), 「미래에셋」(0.05 조원) 순이다.

* 「롯데」: 사업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주)(화학제품 제조업체)의 롯데캐피탈(주)로부터의 자금 대여 등으로 인해 차입 금액이 비교적 크게 나타남

- (특수관계인 대여) 기업집단(23 개)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자금은 0.29 조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0.23 조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농협」의 특수관계인 대한 대여 금액은 0.06조원이며, 해당 금액에는 농협은행(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실행한 개인대출 등이 포함됨.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0.10 조원)*, 「농협」(0.06 조원), 「셀트리온」(0.04 조원), 「부영」(0.04 조원) 순이다.

* 「효성」의 경우 (주)에이에스씨, 효성티앤에스(주), 효성굿스프링스(주)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단기대여금 0.1조원을 지급했고, 만기 전 회수 처리함.

- (유가증권 매도) 기업집단(28 개)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74 조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0.69 조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농협」에서 금융회사인 NH투자증권(주)가 특수관계인인 동일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유가증권(5.05조원)을 매도함.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5.05 조원), 「현대자동차」(0.22 조원)*, 「삼성」(0.18 조원)**, 「영풍」(0.08 조원) 순이다.

* 「현대자동차」의 경우 동일인 · 배우자 · 혈족1촌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88.2%를 차지함.

** 「삼성」의 경우 임원 · 비영리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90.1%를 차지함.

- (담보제공) 기업집단(38 개)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물적담보 금액은 12.3 조원이며, 총수 있는 집단(36 개)의 담보 제공 금액(11.95 조원)이 총수 없는 집단(2 개, 0.3 조원) 보다 약 11.7 조원 많았다.

-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4.58 조원)*, 「두산」(3.20 조원)**, 「장금상선」(0.60 조원), 「지에스」(0.57 조원) 순이다.

*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금호고속㈜의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요 원인.

** 「두산」의 경우 두산중공업㈜의 자금 차입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요 원인임.

<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

1.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올해의 경우, 기업집단 삼성, 에스케이, 롯데, 하림 등 다수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를 시정.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 2 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 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20.4%)이 높게 나타나며, 그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가 129 개사에 달하고 있다.

2.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 관련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 (1.75 조원/2.98 조원)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부동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자금·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자율감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3.7 조원)하고,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0.29 조원)하거나 유가증권을 매도(5.74 조원)하며, 국내 계열회사에 담보를 제공(12.3 조원)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통한 금산분리 원칙의 저해 우려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의계약 비중: 89.9%(‘18년)→ 95.4%(‘19년)→ 93.7%(‘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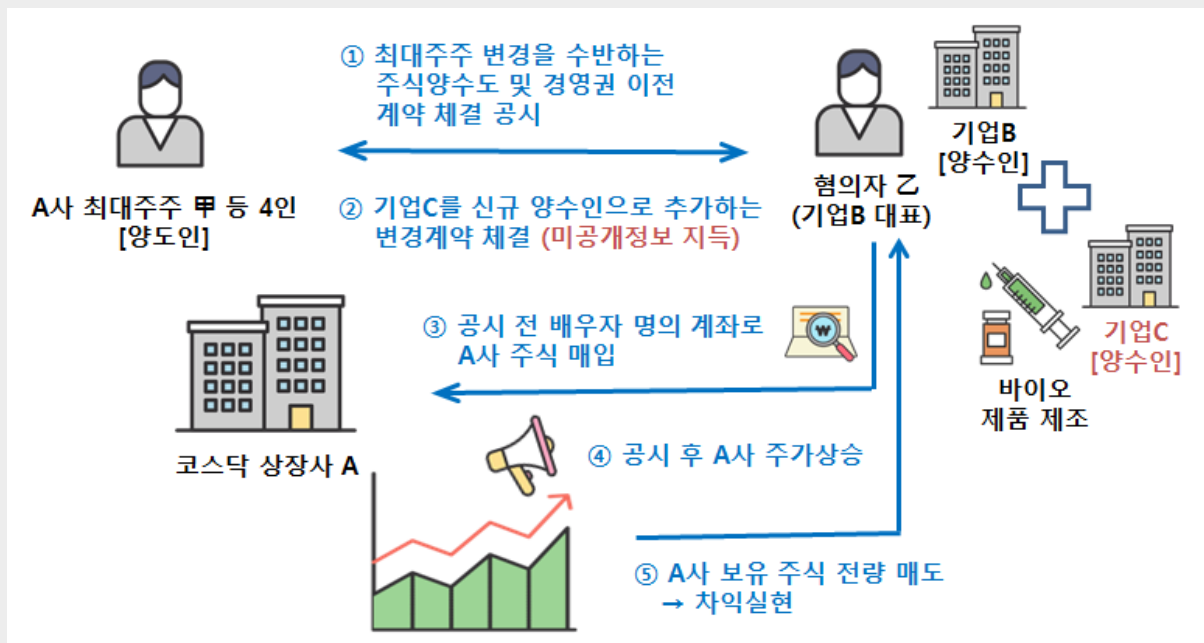
- 부당 내부거래 관련 집행 강화와 함께 경쟁 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 나누기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KPMG Comment

- 2020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기준을 확대하고, 공익법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함
 - 기존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 시, 미리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했음
 -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나 특수관계인이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특정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음
- 내부거래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거래를 감독할 수 있음

2021.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2021.11.9)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①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 甲 등 4인(양도인)은 기업B의 대표乙(양수인)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사실을 공시
- ② 이후 기업C를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기존 양수인 : B사 → 변경 양수인 : C사, B사)
- ③ 乙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변경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신규 양수인 C사(바이오 제품제조社)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의 A사 주식을 매입
- ④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변경 계약 체결 공시(바이오 제품 제조업체인 C사가 경영권 양수인으로 추가)에 따라 A사 주가 급등
- ⑤ 乙은 공시 다음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乙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 통보

-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준내부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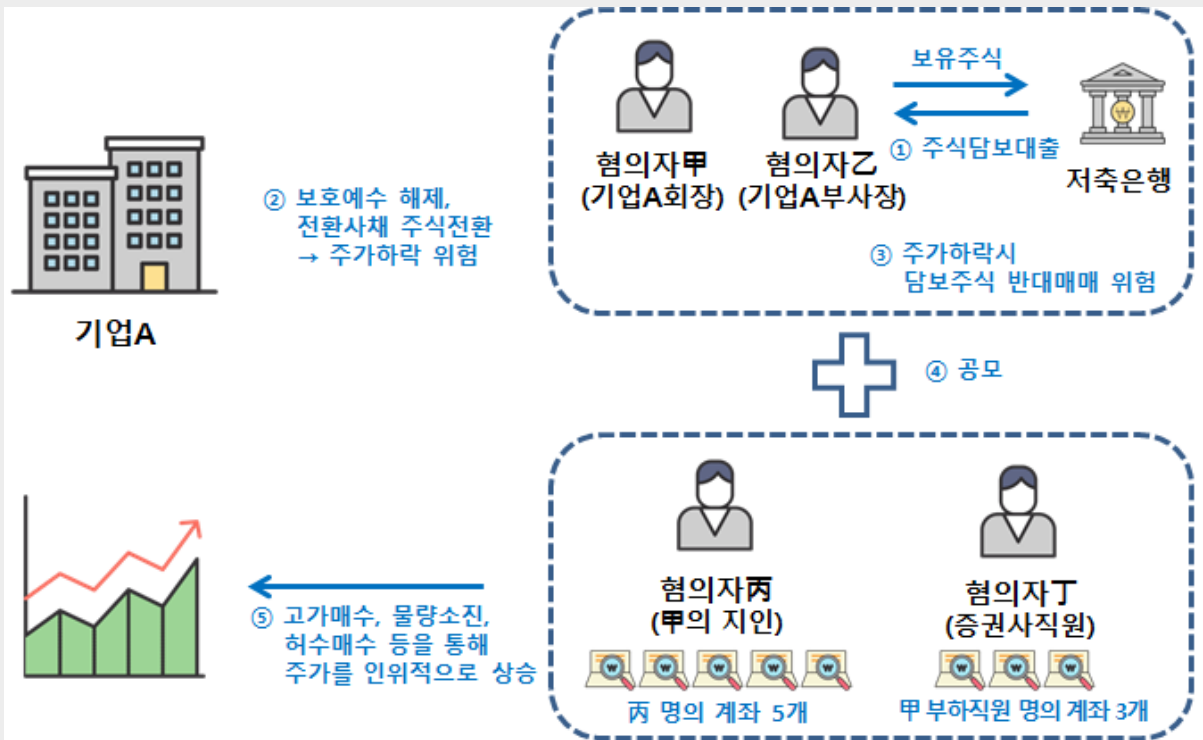
<투자자 유의사항>

- 증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이용 주체)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대상입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 178 조의 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신약 또는 신기술 개발,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입니다.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에 관한 계약에 관한 정보는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경우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자본시장법 §174③ 및 동법 시행령 §201④)
 1.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취득일 것
 2. 10% 또는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할 비율 이상의 대량취득·처분일 것(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54①)
 3. 그 취득·처분이 법 §147①(대량보유 보고)에 따른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투자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공시시스템(DART, KIND)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하여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시세조종



- ① 기업A의 회장 甲과 부사장 乙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
- ② 기업A는 보호예수 기간의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시장에 대량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91%에 달함에 따라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③ 甲과 乙은 추가하락으로 인해 담보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
- ④ 甲은 丙(지인)과 丁(증권사 직원)에게도 동참을 권유하였고, 이 과정에서 丙은 본인 명의 계좌 5개, 丁은 甲 부하직원 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 ⑤ 이들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추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甲, 乙, 丙, 丁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담보제공한 증권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하락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

<투자자 유의사항>

- 누구든지 상장증권등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시세조종 행위로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달리 누구든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거래에 참여하는 자 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거래를 하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시세조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규제대상)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가 금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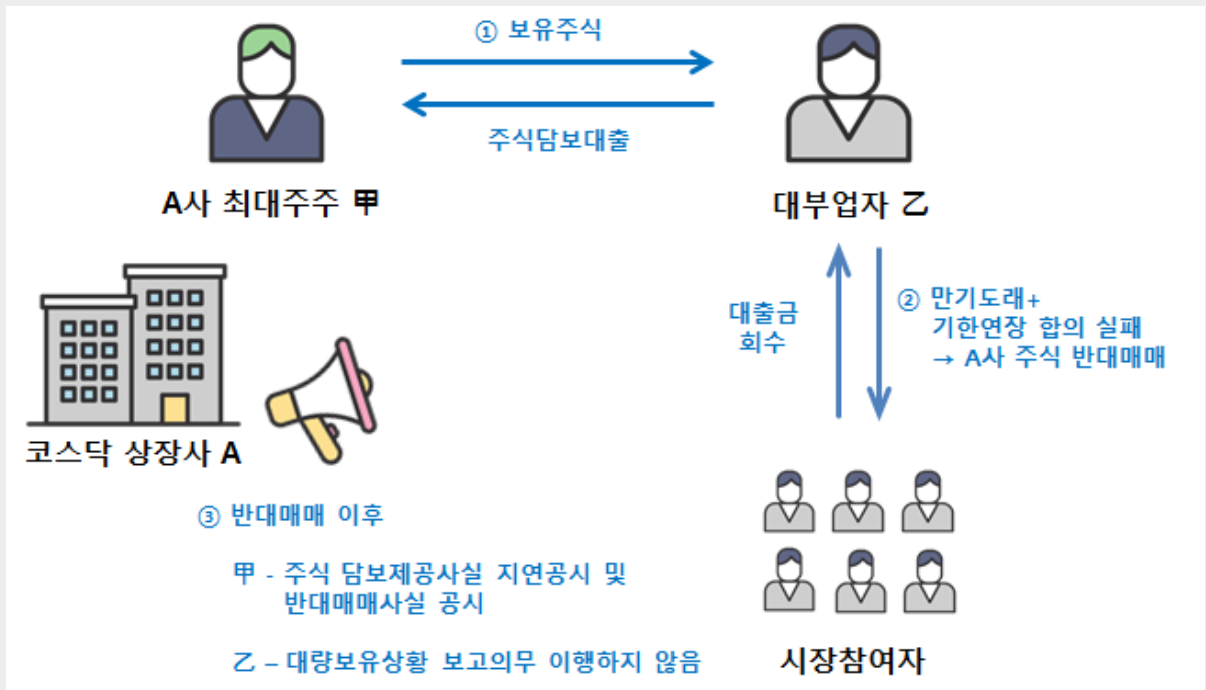
- (금지행위)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고정시키는 행위란 주가에 인위적으로 영향력을 가함으로써 시세를 변동(상승, 하락,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직접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거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자기명의의 계좌를 빌려줘 시세조종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명의대여자도 관여한 정도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운용을 맡기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일은 피하시고, 불공정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면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제보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세조종 주문 제출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증권계좌의 계좌주가 증권계좌를 전달하는 행위 → 시세조종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2007.3.30.선고 2007도877 판결)

-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가치하락을 막아서 담보권자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도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시세상승 뿐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거나 고정*하는 경우도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에는 시세를 상하로 변동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는 행위도 포함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5.선고 2009고합690 판결)

[사례 3]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 ①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대부업자인 乙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② 주식담보대출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기한 연장이 합의되지 않자, 乙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반대매매하여 甲에게 제공했던 대출금을 회수
 - 乙은 대출계약 만기도래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 후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③ 乙의 담보주식 반대매매 이후 甲은 반대매매로 인한 주식처분 내용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담보제공 사실을 포함하여 공시(지연 보고)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지연 보고)과 乙(미보고)을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가 있음
담보권자(채권자) 또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담보권 실행 등)한 경우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

<투자자 유의사항>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신규보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변동보고)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등 중요사항이 변경(변경보고)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형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CB, BW, EB 등
 - **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 '일반투자', '단순투자'로 구분되며(자본시장법 시행령 §154③) '경영참여'의 의미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2017.6.9.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취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는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보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일 경우 본인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갖게 됩니다.
 - 보고의무자는 주식 등의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까지 확대(자본시장법 §147① 및 동법 시행령 §142)됩니다. 따라서 금전의 담보계약 등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갖는 경우도 보고의무대상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제공 사실을 보고(변경보고)하여야 하고, 실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주식 처분 등 소유권이 이전되어 본인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변동보고)가 발생합니다.

- 담보로 제공한 주식 수량은 변함이 없으나 차입처가 변경되었거나 담보계약 기간이 갱신 또는 만료된 경우에도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또는 자금대여자)도 대출상환기한 만기 및 담보비율 하락 등의 사유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획득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Comment

-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함
- 외부감사법 제28조에 따르면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는데, 불공정거래 또한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Back to top](#)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 제목 및 이미지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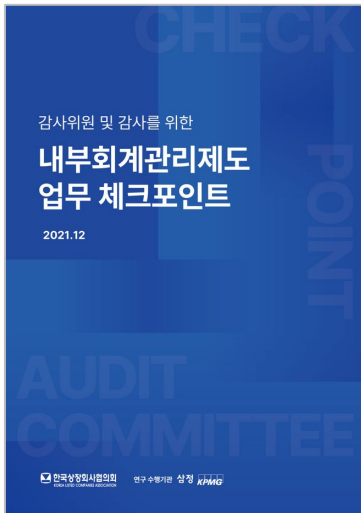
감사위원회 저널 19호



- Global Audit Committee Practice
 - 해외 감사위원회 사례: General Electric, Microsoft
- ACI Insight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기업의 감사위원회 활동 점검
 - 2022년 외부감사인 선임을 앞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절차
- Case Study
 - 사외이사 선임·연임 및 임기 연장과 관련된 주요 사례
 - 준법지원인 퇴사 시 내부감사팀장의 견임 가능 여부

[출처]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발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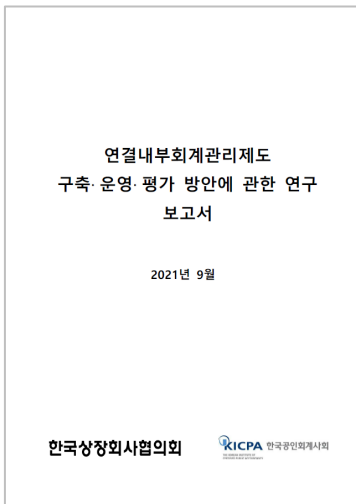


※ 발간 전이므로 표지, 목차 등 변경될 수 있음

- I.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 II.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점검
- III. 변화관리 및 위험평가
- IV.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
- V. 최종평가 및 보고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삼정KP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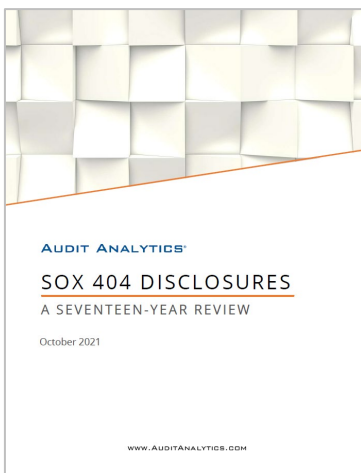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 분석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 일반적인 방법론 제시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를 위한 조직 체계와 절차 등 제시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선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평가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제시 동일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공인회계사회

SOX 404 Disclosures: A Seventeen-Year Review



※ 동 보고서 원문은 유료 자료이므로, Blog 페이지로 안내

- 2019년 대비 2020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 비적정 의견 기업 수와 비율이 상당 폭 감소
 - 지난 2020년 4월 27일, SEC는 'Accelerated Filer'의 기준을 변경
 - Accelerated Filer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외부감사인 감사(Auditor Attestation) 적용됨
 - (기존) Public Float*가 7,500만 달러 이상
 - (변경 후) Public Float가 7,500만 달러~7억 달러이면서 동시에 연 매출이 1억 달러 이상
 - 즉, 기존에는 Accelerated Filer였으나 새로운 기준에 따라 Non-accelerated filer가 되면서 외부감사인 감사가 면제된 기업의 수가 증가

*공개적으로 발행되어 일반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으로, 시가총액에 준하는 개념이나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시장에 유통 중인 주식을 의미

[출처] Audit Analytics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의 및 요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1.9.28)

Q

-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의 및 요건은 무엇인지?

A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55 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회사를 의미함
 - 보다 상세한 정의 및 요건은 아래 관련 법규 중 중소기업기본법 부문 참고

관련 법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55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에서 제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 및 원칙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는 유연하고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내부통제의 5가지 구성요소 및 17가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성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한다. (후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삭제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라.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25. 음료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Back to top](#)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 제목 클릭으로 기사 원문 확인 가능

국내 동향

- **73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성 놓고 외·내부 감사의견 달라 [연합뉴스, 2021.11.3]**
 - 삼정 KPMG 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9호에 따르면 2020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는 전체 2,198개사 중 87개사(유가증권시장 23개사·코스닥시장 64개사)
 - 이 중 외부감사인과 달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적정' 의견을 낸 상장사가 73개사(83.9%), 경영진 의견이 '적정'인 상장사는 그보다 많은 78개사(89.7%)
 -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진실한 평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진이 독립적인 평가조직과 절차에 따라 신뢰할 만한 평가 결론을 도출해야 하고 이를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보고 받고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중소 부담 주는 내부회계관리제 외부감사 재검토 [한국경제, 2021.11.1]**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 고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 기업은 회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언
 - 고 위원장은 "미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회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첨언
- **新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 기업 93.4%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1.11.3]**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신(新) 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공동 개최
 - 新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도' △기업규모 및 업종별로 표준감사시간 지정하는 '표준감사 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로 구분
 -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94.2%가 증가했다고 답한 가운데 감사품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2.2%, 감사품질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응답이 10.5%
 - 3대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93.4%가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6.6%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함

해외 동향

- **SEC Issues Awards Totaling More Than \$15 Million to Two Whistleblowers [SEC, 2021.11.10]**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명의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각각 1,250만 달러 이상, 250만달러 이상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고 공표
 - 증권거래위원회는 2012년 최초 수여 이래 226명의 개인에게 합산 약 11억 달러의 포상금 지급

[Back to top](#)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금융감독원 등]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 일 시: 2021년 11월 29일 (월) 오후 15:00 ~ 17:00
- 방 송: 금융감독원 유튜브(www.youtube.com/fsskorea) 송출
- 자 료: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자료실 → 교육·참고자료
- 참석자: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및 이해관계자(투자자) 등
- 주 최: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주요 내용

K-IFRS 주요 개정내용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1012호(법인세) 등 '21년도에 개정된 기준서 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도 안내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공시 및 보험계약 사전공시 모범사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식 요구사항이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주식공시 모범사례('21.4월) 내용을 안내 '23년부터 시행되는 新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안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자산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의견조율을 위한 조정협의회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 등을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

[감사위원회포럼]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1년 제4회 정기 포럼

- 주 제: 분식사태에 기반한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 역할
- 일 시: 2021년 11월 18일 (목) 오전 09:30~10:50
- 장 소: 온라인 웨비나(Web-Seminar) 실시간 진행
- 프로그램

사회: 오현창 삼정KPMG 전무

시간	내용	Speaker
9:30~9:35 [5분]	인사말	오현창 삼정KPMG 전무
9:35~10:05 [30분]	주제1.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10:05~10:45 [40분]	주제2. 사례에 기반한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 역할	심정훈 삼정KPMG 상무
10:45~10:50 [5분]	Q&A / Closing	

- 수료증 발급 등 문의
 -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www.acforum.or.kr)
 - Tel. 02-2112-3305 / 02-6952-6760
 - E-mail. ykim91@kr.kpmg.com / acforum@acforum.or.kr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신장훈 부대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Leader



김유경 전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부Leader

신장훈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위승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변영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조원덕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허세봉 부대표	품질관리 담당
염승훈 부대표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최재범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권영민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일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황재남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김유경 전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심정훈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김시우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 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조정래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지동현 상무	조선, 기계, 물류, 바이오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윤주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최재혁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김연정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김봉한 상무	Infrastructure, 정부, 헬스케어 부문 담당

[Privacy](#) | [Legal](#)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